



# 기 술 정 보



월간 기술정보지 통권 제39호 (2014년 9월호)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발행



「명동 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 조감도

## 목 차

### ■ 건설관련 소식 ..... 1

- 경남도, 올 여름 "풍수해 없는 안전경남" 총력
- "여름철 폭염 대비" 대국민 홍보에 나선 경남도
- 쾌적하고 안전한 지방도 유지를 위한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활동 강화
- 경남도 전국 최초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선정
- 경남도,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국책사업 확정
- 경남도,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조성 탄력 받는다
- 경남도, 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보조금 받기가 쉬워진다!
- '경남도' 서민 아파트 정책 하나씩 착착 실현
- 경남도,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나서
- 추석맞이 지방도 일제정비...안전한 귀성길 되세요
- 지진발생해도 재난통신시스템 안전
- 경남도,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민·관 합동안전 점검 나서
- 사방댐, 산사태 재해 안전망 한 몫
- 진주 금형(뿌리)산단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쾌거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 진주혁신도시 기대' 서막을 열다

### ■ 지식정보 ..... 15

-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
- 11월부터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 BEMS KS 제정! 세계 최초로 산업 표준화!
- "연말까지 고속도로·국도 42개 구간 384km 개통"
- 국토부, 전국 대형 굴착공사 현장점검 실시
-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임대주택용지 탄력적 공급 허용
- 2014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결과 한미글로벌 6년 연속 1위 차지
-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 아파트 '부실감리', '관리비리' 신고창구 개설!
- 국토교통부 통계정보가 한눈에 "쑹"

### ■ 배워서 남주 者 ..... 27

### ■ 입법예고 및 법령해석 ..... 34

### ■ 신기술 정보 ..... 39

### ■ 건설기술심의 현황 ..... 44

### ■ 계약심사 현황 ..... 45

### ■ 기술인 나눔 정보 ..... 46

### 경남도, 올 여름 “풍수해 없는 안전경남” 총력

- ▶ 풍수해 사전대비 체계구축 및 재해위험지구 사전점검 실시



경남도는 올 여름철 이상기후 현상 대비 인명피해 및 도민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5.15일부터 10.15일까지 지역 유관기관과 18개 시·군 및 읍면동 등 재해관련 전 기관이 24시간 업무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여름철 풍·수해 대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하였다.

이와 더불어 6월1일부터 8월31까지 3개월 동안을 물놀이 안전관리 중점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도, 시군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추진키로 하고,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기상상황에 따라 5단계(준비단계, 보강단계, 비상Ⅰ,Ⅱ,Ⅲ 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대처함으로써 인명피해 최소화 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대처를 위해 업무기능별로 13개 협업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실시간 현장 상황 모니터링, 재해 상황 분석·판단 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정보 제공,

사전 주민대피·통제 등 선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중요방재시설(596개소), 재해위험지구(231개소), 대형공사장(206개소), 위험구역(50개소) 급경사지(752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535개소) 등 재해취약시설 2,370개소에, 전담 관리자 3,081명을 지정하여 특별관리 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 예·경보시설(320개소), 강우관측 시설(352개소)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4시간 완벽하게 작동 가능토록 정비하였으며, 여름철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하여는 차량 사전통제 지침에 따라 하천변 하상도로(25개소), 세월교(58개소), 잠수교(10개소) 등 수위 급상승으로 인한 침수예상도로 93개소에 대해 신속한 교통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조치도 완료했다.

이와 더불어 경남도는 각종 재해·재난 사건 발생 시 초동대응이 사건 사고 수습의 승부를 판가름한다는 중요성을 감안, 자연재난 관련 대응 매뉴얼 “초기 90분을 골든타임(Golden Time)”으로 인식하고 재난상황별 단계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 개인별 수행 임무를 부여하여 재난업무 책임 전담제를 운영하는 등 각종 재난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발생 시 피해주민 조기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425억원을 확보하여 필요시 재난지원금으로 신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주민이 피해 신고만 하면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세제·용자 등 간접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시행토록 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 추진 시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는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간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이채건 안전건설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여름철 풍·수해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하여 7. 21 ~ 7. 29까지 8일간에 걸쳐 시행 중인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5개 현장에 대한 추진 실태를 직접 점검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 37건의 현지시정을 지시하는 등 미비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올 여름철 인명피해와 도민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자연재해 및 물놀이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도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평소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수칙 등을 잘 익혀두고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자연재해1팀당  
(055)211-4543.



## “여름철 폭염 대비” 대도민 홍보에 나선 경남도

### ▶ TF팀 구성·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경남도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8월부터 도민들의 폭염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여름철 도민 건강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여름철이 시작된 지난 6월부터 오는 9월말까지 총괄관리반, 건강관리지원반, 시설관리반 3개반 20명으로 합동 T/F팀을 구성하여,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상변화에 따른 상황을 도민에게 전파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우선, 도민들께서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마을회관,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등에 지정된 4,979개소 ‘무더위 쉼터’를 활용하여 가장 무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건설현장, 농사일, 체육활동 등 각종행사를 자제토록 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강조하였으며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야외작업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만일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로 즉시 연락하여 신속한 구조를 받도록 하였다.

한편, 경남도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8월 전반까지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등)는 집중 건강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폭염으로 인한 건강관리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을 자주 마시거나, 더운 시간대에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자연재해2팀당  
(055)211-4593



## 과적하고 안전한 지방도 유지를 위한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활동 강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화물의 대형화와 중량화로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으로부터 지방도의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과적)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행제한(과적)차량은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과 너비 2.5M, 높이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축중량 11톤 과적차량 1대의 도로 파손율이 승용차 11만대 운행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고정검문소 1개소와 이동단속반 3개반 등 총 인원 32명을 편성하여 과적 운행 다발지역과 주요 운행시간대 단속을 시·군 및 유관기관(한국도로공사, 진주·진영국토관리사무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2014년 상반기 동안 단속을 실시한 결과 6월 말까지 1,951회 차량 검측을 실시하여 적발 216건에 과태료 1억5천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단속 10회, 과적 유발업체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물 4,000부를 배부하는 등 과적 운행 근절 활동에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단속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도 자체 기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다.

하반기에도 대형차량 운행이 빈번한 지방도 주요 노선에 운행제한차량 공고 표지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과적방지 홍보캠페인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도 7월 29일자로 도로상 화물차 과적을 근절하기 위해 이동식 단속을 늘리고 현재 300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안을 담은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  
(055)254-4123



## 경남도 전국 최초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선정

- ▶ 사천 일원에 총 400억 원이 투입, 구조 및 기술 고도화 지원
- ▶ 경남미래 50년 사업인 ‘항공산업 국가산단 조성사업’ 청신호

사천시 일원에 전국 최초의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경남도는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천시 용현면에 소재한 종포일반산업단지과 사남면에 소재한 사천임대전용산단 일원을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 규모는 총 76만 9000㎡로서, 올해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4년에 걸쳐 시행되며, 국비 250억 원과 지방비 80억 원, 민자 70억 원 등 총 400억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으로 항공우주산업의 구조 및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 생산시설 및 물류센터 건립, 중소부품 업체의 R&D 지원, 항공 인력양성 등에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반적인 사안을 전담하게 되며, 수행기관은 한국항공

우주산업진흥협회가 맡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사천지역이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됨으로써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의 핵심 사업이자 홍준표 도지사의 최대 공약사업인 '항공산업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지정된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특화단지'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특화산업단지'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특화단지'는 항공우주산업 개발촉진법에 의거 집약도가 높은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특화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가 직접 항공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경남지역의 항공기업체의 집적화와 입주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항공산업 국가산단 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경남도는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난해 7월부터 항공산업 육성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도는 전국 최초로 8월 7일 항공우주산업과를 신설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전력을 하고 있다.

김영삼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과장은 “이번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 추진 중인 항공산업 국가산단단지 지정에도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항공우주산업과 항공우주담당 (055)211-6412

## 경남도, '로봇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국책사업 확정

- ▶ 경남도 최초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 국비 813억원 등 총 1,284억 투입, 5년간 추진

경남도가 추진 중인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8월 5일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경남도는 홍지사 취임 이후 '경남미래 50년 사업' 40개 전략사업을 발굴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번에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미래50년 전략사업이자 홍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중의 하나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비가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대형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자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경남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으로써 내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경남도 최초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라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경남도는 그동안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5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설명회 개최 2회, 보완자료 제출 6회 등의 과정을 거쳐 2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이주영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제성 및 타당성 등을 인정받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추진될 예정이며, 창원시 일원에 한 곳을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1천 284억 원으로 연구개발에 861억 원, 기반구축에 423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 사업은 로봇기반구축시설인 제조로봇 토탈솔루션 테스트플랜트를 건축하고, 로봇개발설계실, 로봇제작실, 로봇신뢰성평가실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반구축과 연계하여 인간-로봇 공간공유, 청결·위생작업, 고온·고중량·내열작업, 밀폐공간작업, ICT물류와 같은 특수제조환경을 지원하는 제조로봇 연구개발사업 등도 추진된다.

경남도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은 “경남의 전통 주력산업인 기계산업에 최첨단 로봇이 접목되어 앞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기계·노용융합과 로봇산업담당 (055)211-2743



## 경남도,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조성 탄력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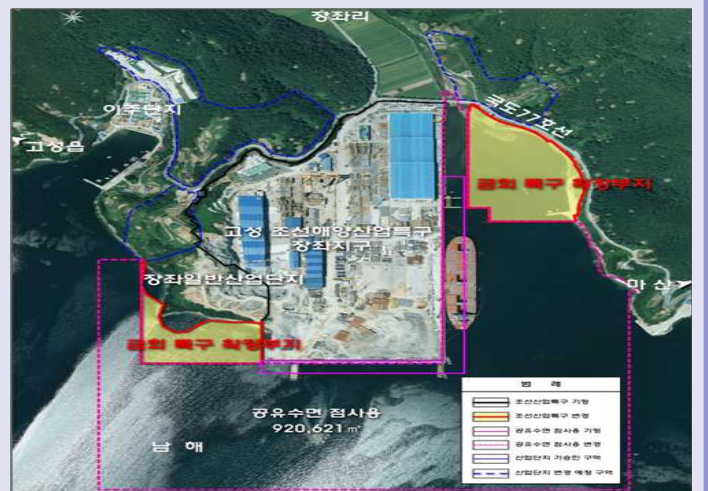
▶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변경” 포함



《위 치 도》



《내산지구, 삼강엠편터》



《장좌지구, 고성조선해양》

지난 8월 12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고성 조선산업특구를 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하는 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경남도와 고성군의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경남도는 올해 해양플랜트 관련 사업을 경남 미래 50년 사업으로 선정하여 거제 해양플랜트 생산단지 조성,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육성, 하동 해양플랜트산업 연구단지 조성 등 남해안에 조선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는 해양플랜트 설비 생산 공간 확보를 위한 과제로서 연내 특구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구 변경계획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조선산업특구를 조선해양산업특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 2007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던 사업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면적은 고성 동해면의 내산지구 22만 7천㎡, 장좌지구 100만 4천㎡를 포함한 총 123만㎡가 증가되어 총 면적은 265만㎡에서 388만㎡으로 확대된다.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는 기존의 조선기자재 및 중소형 선박 건조에 국한되어 있던 조선산업특구를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설비 생산에 필요한 전용 공간을 추가 확대 조성하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부 및 점사용부를 확장하는 것이다.

앞으로 경남도는 올해 9월말 중소기업청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구변경을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 경남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반산업단지 변경계획을 승인받아 2018년 말에 산업단지를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특구 변경으로 2천억 원의 직접 투자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특구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3조 2천 46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8천 764억 원의 부가가치효과, 9천 9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일동 경남도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지난 7월 22일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변경계획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변경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조선해양산업특구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 : 도 조선해양플랜트과 조선해양팀당 (055)211-2754



## 경남도, 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 보조금 받기가 쉬워진다

- ▶ 투자하기 좋은 경남을 위한 조례규칙 개정
- ▶ 보조금 지원기준 대폭 완화

투자촉진 지구로 입주하는 경남도 기업은 앞으로 보조금 받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경남도는 도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대폭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경남도는 현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내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9개 기업에 대하여 15억 8천 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는 투자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행보에 발 맞추기 위하여 투자유치 걸림돌을 걷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지원 조건을 전면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초기 투자자본 부담경감, 지원금액 상향 조정, 낙후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 시 투자촉진지구 내 내수경기 진작, 낙후지역 균형발전 등의 효과 또한 기대된다.

경남도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4년에는 14개 기업에 26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전년대비 기업수 55%, 보조금이 64%가 증액 지원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촉진 지구에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마다 늘려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9월 시행 예정이다.

<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지원제도 개정(안) >

구 분	현행 조건	개정(안)	비 고
지원요건 완화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	20억원, 10명 이상	지원대상기준 완화
입지보조금 증액지원	분양가 30%이내, 2억원	50%이내, 5억원	초기 투자자본 부담경감
고용보조금 및 교육 훈련보조금 기준 완화	20인 초과, 1인당 100만원, 6개월	10인 초 과, 12개월	고용창출 효과
시설보조금 기준 완화	30억원 초과 설비 금액의 2% 이내	20억원 초과설비 금액의 2% 이내	설비투자 (재투자)유 도
이전보조금 기준완화	10억원 초과 이전 시설 가액의 1% 이내	5억원 초과, 2%이내	낙후지역 이전유도

■ 자료 : 도 투자유치단 투자정책담당  
(055)211-3133

## 경남도發 시민 아파트 정책 하나씩 착착 실현

- ▶ 전국 최초의 ‘임대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개선대책’ 홍천군으로 확산
- ▶ 홍지사가 한나라당 대표시설 제안한 ‘반값 아파트’ 거제에서 출발

4일 경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임대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개선대책’이 도내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산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대아파트 살던 임차인에게 분양할 때 분양가를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것인지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어 왔다.

표준 건축비는 단위 면적당 건축비를 뜻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면적과 층수에 따라 건축비 상한가격을 정하여 고시한 금액이다.

이러다 보니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면 통상 건설업체 등 임대사업자가 이익을 많이 챙기게 되며, 분양을 받는 주민은 돈을 더 내게 된다.

그동안 도는 지난해 10월에 창원시와 김해시를 대상으로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건설사의 부당이득금 실체를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표준건축비를 기준하여 산정한 분양가에 대해 입주민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도내에는 지난해 12월에 김해 장유 갑오마을 5단지 입주민이 승소하여 세대 당 6백 719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청주, 군산 등지에도 입주민들이 모두 승소하였다.

그런데, 지난 7월 25일에는 춘천지방법원이 부당 이익금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원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지방법원은 홍천군이 군내 320세대에 대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승인 시 실건축비로 산정하지 않고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이므로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 경남도의 ‘임대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개선대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도에 따르면 홍천군 소재 임대아파트 대표로 부터 요청이 있어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대책 자료를 활용토록 제공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31일 승소 판결문을 받은 임차인 대표로부터 감사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경남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련자료 제공과 법령해석 등 설명에 감명을 받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다.

현재 동일한 사유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인 김해 장유 지역 4개 단지 2천 29세대에도 판결에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도는 이번 판결로 인하여 도내에서 분양을 전환하고 있는 창원, 거제 등 5개단지 2,681세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세대당 2~6백만 원 정도 총 1백억 원 정도 분양가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경남에만 최근 분양전환 완료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가 98개 단지에 총 4만 7천 237세대나 되는 만큼 이번 판결내용을 시군에 통보하여 부당 이득금 반환 권고 업무에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남 도내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값 아파트’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와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 원대 아파트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는 이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결정을 하였으며, 500~600세대 규모의 사업 부지가 확정되었다.

앞으로 남은 과정은 올 연말경에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면 내년 초에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초에 아파트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 2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거제시를 순방한 자리에서 시 관계자가 이를 건의했으며,

그 자리에서 홍 지사가 ‘300만 원대 아파트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본격 추진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07년 홍준표 도지사가 한나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반값 아파트’ 정책 관련 일화가 유명하다.

그 당시 이명박 前대통령께 ‘반값 아파트’ 정책을 건의했으나 ‘건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때 하라’는 답만 듣고 정책 실현이 거절당한 일이 있다.

‘반값 아파트’ 정책은 당시 급등한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있는 건물만 분양하는 원리이다. 수요자는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고, 국가나 지자체에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한편, 조현명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개선 시책과 관련하여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다.”며 이어 “최근에는 부산, 광주,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추진방법 등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전국 확대 시 4천 7백억 원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건축과 주택관리담당  
(055)211-4433

## 경남도,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나서

▶ 8월 31일까지 17개 시군 다중이용시설 57곳 안전점검 실시

경남도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추석을 맞아 도민과 귀성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안전한 명절을 지키기 위해 실시된다.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도내 17개 시군의 다중이용시설 57곳으로 판매시설 15곳, 대형건축물 13곳, 대형숙박시설 18곳, 청소년수련원 및 수상안전시설 11곳이다.

경남도는 2개 안전 점검반을 편성하여 8월 31일까지 건축, 전기, 가스, 기계, 유지관리 분야 등 분야별로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경남도는 오는 27일 추석 연휴 도민의 이용도가 높은 부림지하상가, 창원청과시장, 팔용농산물직판장의 대형판매시설 3곳과 창원종합버스터미널 1곳 등 총 4곳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인모 경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추석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점검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긴급 안전조치를 완료하여 안전사고 없는 추석명절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당 (055)211-4525

## 추석맞이 지방도 일제정비…… 안전한 귀성길 되세요.

▶ 경남도, 9월 5일까지 지방도, 위임국도 정비 점검 나서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휴가 시작되기 전 오는 9월 5일까지 도내 지방도를 대상으로 귀성 차량의 증가 대비와 안전한 귀성길 제공을 위해 '추석맞이 지방도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를 위해 경남도는 3개반 6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지방도 47개 노선 2,414km와 위임국도 7개 노선 374km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경남도는 점검 결과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는 신속히 복구하고, 도로변 무단 적치물 및 불법 현수막 제거, 도로 안전시설물(가드레일, 낙석방지책, 방호벽 등)을 적기에 보수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귀성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장마로 인해 측구, 배수암거 등 배수구 퇴적 토사를 제거하여 기능을 유지하고, 공사 현장 안전조치, 도로 법면유실 방지, 절개지 및 낙석위험지역 취약 구간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경남도는 연휴 기간 중 지방도 건설공사 현장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사업장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집중호우·태풍 등에 대비한 수방자재 등을 추가 확보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이용재 도로과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경남도를 찾는 귀성객과 외지인들에게 밝고 깨끗한 경남 이미지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경남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으로 운전자와 통행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료 : 도 도로과 도로시설담당 (055)211-4674



## 지진발생해도 재난통신시스템 안전

▶ 경남도, 재난통신시스템 보호용 면진장치 설치 완료



경남도는 지진으로부터 진동과 충격에 민감한 각종 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경보통제 상황실에 면진장치 설치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한반도의 지진발생은 지난해 총 93회로 그 빈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에 공공기관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7조에 따라 지진에 대비한 상황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상황실을 내진 설계된 시설물에 설치하고 통신설비 보호를 위해 면진장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010년에 내진 설계된 별관 건물에 재난 관련 통신시스템을 이전하여 지진으로 인한 피해예방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면진장치 설치에 1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민들 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영상장비, 기상종합관측, 재난위험지역 CCTV, 그리고 경보통제상황실의 민방공경보발령 통제시스템 등에 지진 충격으로 인한 장비손상을 방지하고 재난업무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면진장치는 지진에 의한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여 구조물에 전달되는 충격을 감소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면진장치의 주요기능은 지진발생 시 장비가 설치된 시스템실의 이중마루가 붕괴되어 전도되거나 장비함체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장비와 연결된 전선이 이탈되거나 절단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경남도 구인모 안전총괄과장은 “지진에 대비한 면진장치 설치로 재난관리시스템과 경보통제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도와 시군 청사에 지진 가속도 계측센서와 지진 계측자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한 경남실현’과 도민의 생활편의를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장비를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경보통제담당 (055)211-4793



## 경남도, '추석 대비 다중이용시설' 민·관 합동안전점검 나서

▶ 27일 창원시 소재 부림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4곳 점검



경남도는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7일 창원시 소재 4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민·관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도민의 이용도가 높은 부림 지하상가, 창원 청과시장, 팔용 농산물직판장, 창원 종합버스터미널을 대상으로 경남도, 안전관리자문단, 관할소방서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되었으며, 건축물을 비롯하여 가스·전기시설 유지관리실태 및 소방시설물 작동상태 등 전 분야에 걸쳐 점검이 진행됐다.

이채건 경남도 안전건설국장은 “추석을 맞아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도민들이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시설관리자는 사고예방을 위해 각별히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9월 한 달 동안 도 자체 안전점검반 2개반 6명을 편성하여 여객터미널, 판매시설, 공연시설, 집회시설,

재해위험시설 등 56개 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자료 : 도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당  
(055)211-4526



## 사방댐, 산사태 재해 안정망 한 뼛

▶ 지난 집중 호우 시 산사태로부터 인명·재산 보호, 사방댐 효과 “톡톡”



지난 25일 창원에 240mm, 고성 235mm 등 경남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비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였으며, 특히 창원지역은 시간당 88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져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발생했다.

최근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에 따라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산림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규모도 대형화·집중화 되는 추세여서 피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설치 등 사방사업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창원지역을 비롯한 경남지역에 지난 25일 내린 집중 호우 때 올해 시공한 사방댐과 사방사업으로 상류의 토석류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도내 산사태 발생을 최소화했다.

또한 2012년 태풍 ‘산바’ 내습으로 당시 산청은 37곳 20ha에 이르는 산사태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었으나, 차황면 실매리 지역은

2003년 사방댐 5곳을 설치하여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를 저지했다.

이로 인해 3개 마을 200여 가구 700여 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사방댐의 재해예방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사방댐은 아주 작은 규모의 댐으로 산간계곡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여 상류에서 산사태로 인한 토석 등이 급류를 타고 밀려 내려오는 것을 사방댐이 차단하므로 하류 생활권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재해방지 시설이다.

현재까지 도내 설치된 사방댐은 851곳으로 올해는 90곳이 설치되었으며 우수기 이전인 6월말까지 80%이상 설치를 완료했다.

김황규 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은 “자연현상인 산사태 자체를 막을 수 없더라도 산사태로부터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방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민들에게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연평균 산사태 발생면적은 1980년대 231ha에서 2000년대 713ha로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491ha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 자료 : 도 산림환경연구원 산지보전과 (055)254-3922



## 진주 금형(뿌리)산업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쾌거

- ▶ 홍준표 도지사, 민선6기 도정공약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조기 이행
- ▶ 경남 미래 50년 사업 서부 대개발 탄력 받아



경남도는 9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계획’에 따라 진주시 정촌면에 조성중인 ‘진주 금형(뿌리)산업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민선 6기 도정공약 사업을 조기 이행함으로써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부 대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전국 8개 시·도의 11개 단지를 신청받아 뿌리기업간 협동화 정도, 단지역량, 고도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하여 그 중 8개 단지를 지정되었으며, 경남도는 지난해 8월 밀양하남산업단지가 지정된 이래 두 번째로 지정받은 것이다.

\* 뿌리산업이란 :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주조,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뿌리산업진흥법 제2조)

<2014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단지명	지역(위치)	특화단지 면적	업종	비고
진주 금형(뿌리) 산업단지	진주시 정촌면 예상리·여하리 일원	410,152 m <sup>2</sup>	금형, 소성 가공	전국 6개 시·도 8개단지 지정

‘진주 금형(뿌리)산업단지’는 진주시 정촌면에 964,533m<sup>2</sup> 규모로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업종을 입주 업종으로 하여 2017년까지 진주에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8월 12일 경남도에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특화단지 지정면적은 산업단지 내 410,152 m<sup>2</sup>로 앞으로 사업 추진 상황을 검토해서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산업부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규제와 입지문제, 에너지비용 상승에 뿌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뿌리기업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예정인 산업단지 중 우수 단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하며, 환경시설, 에너지시설 등 단지 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활용 시설을 설치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올해는 국비 총 61억 원을 투입하여 각 단지별 10억 원 내외 규모로 지원하며, 진주 금형(뿌리)산업단지는 본격적인 조성 시기에 맞춰 입주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물류시설 등 공동활용 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뿌리산업 종합육성 계획 수립과 추진에 큰 동력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경남도는 인근의 국비와 지방비 405억 원을 투입해 올해 말 준공목표로

건립 중인 ‘진주 뿌리기술지원센터’와의 연계로 서부권이 뿌리산업의 육성 거점으로 성장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남도 박달호 기계나노융합과장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경남지역에 뿌리산업을 집적하고 특화시켜 항공, 조선해양플랜트, 기계산업 등 도내 주력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주춧돌로서 이들 특화단지를 잘 육성시켜 앞으로 뿌리산업 수요에 필요한 산단조성의 롤모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 : 도 기계나노융합과 기계융합담당 (055)211-2715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 진주 혁신도시 시대” 서막을 열다

▶ 28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 참석 신사옥 이전 기념식 가져

2014년 8월 28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32년간 여의도 생활을 마치고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경남도는 경남도 행정부지사, 지역 국회의원, 진주부시장,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이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청한 신사옥은 부지 16,507m<sup>2</sup>에 건축 연면적 18,980m<sup>2</sup>(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사업비 435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 12월 착공하여 2014년 5월에 준공했다.

아울러 지난 5월 26일부터 이전을 시작해 7월 21일에 직원 366명이 이전을 완료했다.

이번 신사옥 이전 개청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중앙관세분석소(2013년 2월), 한국남동발전(2014년 3월), 국방기술품질원(2014년 6월)에 이어 네 번째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인 중소기업 시설 근대화, 경영기술 인력 양성, 신제품 개발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등 중소기업 발전과 국가 산업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공단 이전을 계기로 지역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고용창출과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서부경남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발맞추어 경남도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의 빠른 지역 정착을 위해 치안,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에 불편이 없도록 35개 이전과제를 선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정서적 두려움이 없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남을 제2의 고향으로 느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는 올해 한국남동발전, 국방기술품질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전에 이어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나머지 7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2015년까지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3만 1천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 2조 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1조 1천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서부 경남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남도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부청사 이전과 진주·사천 항공산단, 김천~진주~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서부경남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 자료 : 도 서부청사추진단 혁신도시팀당 (055)211-6484

## 다세대, 오피스텔도 층간소음 기준 적용된다

▶ 국토부 「층간소음 가이드라인」 마련

- ① 인천 부평구 소재 빌라에서 2층에 사는 집주인과 1층에 사는 세입자간의 층간소음 문제로 도끼를 휘두르고 불질러 세입자 등 2명을 사망하게 한 집주인에게 징역 20년 선고 ( '13. 5.14)
- ② 양천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사제 화염발사기와 석유를 가득 채운 맥주병 10개를 윗층으로 들고가 불을 지르고,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던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선고 ( '13. 8.30)

앞으로 다세대, 오피스텔 등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하는 건축물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된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하여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었던 이웃간 살인, 방화 등 사고사례의 대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하였던 소규모 주택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8월 13일 시달하였다고 밝혔다.

동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이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가 건축법에 반영되어 금년 11.29일부터 시행되므로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이번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하였다.

①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 중량충격음 : 50dB, 경량충격음 : 58dB\*을 만족하여야 한다.

\* 중량충격음 :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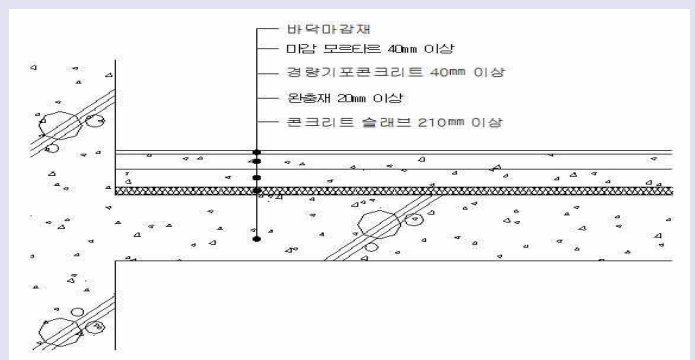
\* 경량충격음 :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② 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 : 50dB, 경량충격음 : 58dB)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붙임 참조)로 할 수 있다.

③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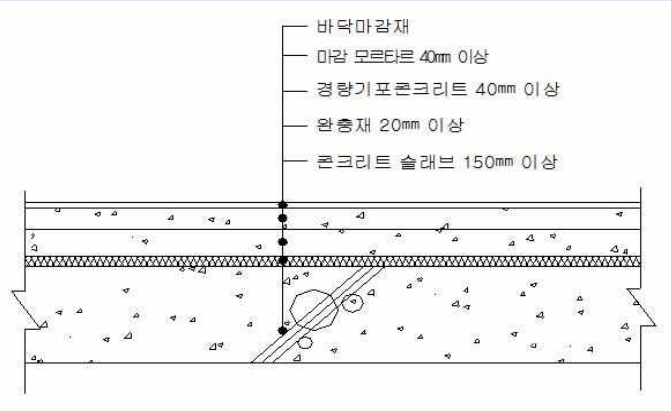
○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금년 8.13일에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표준바닥구조 도해(벽식 구조)》





《표준바닥구조 도해(라멘 구조)》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4082

## 11월부터 건축물 등에 “안전·범죄예방 기준” 의무 적용

### ▶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4. 8. 19.)

올해 11월부터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과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등을 마련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이나 고시원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별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하여야 한다.

◆ 대학가 원룸촌 치안 시설이 미비해 여성거주자들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4.12일 강원 춘천 효자동 소재 원룸에서 자취 생활을 하는 박모씨가 최근 원룸 공동세탁실에서 속옷 일부를 도난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박씨는 경찰과 건축주에게 범인을 색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다세대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범인 찾기가 쉽지 않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춘천 뉴시스)

◆ 광주·북구 여성전용 고시원에서 성폭행 사건 발생(‘11.8), 동두천 고시원에서 여고생 성폭행 사건 발생(‘11.11) 등 건축물내 강력범죄 지속 발생

이는 최근 건축물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데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14.5.28) 되었기 때문이다

- \* 전체 범죄 중 건축물에서 발생한 범죄가 약 60%를 차지 (2012 경찰범죄통계)
- \* 전체 국민의 63.2%가 범죄에 불안하고, 46.6%는 5년 전과 비교하여 더 위험해졌다고 인식 (통계청 자료)

국토교통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14.11.29)에 맞추어 현재 권고 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범죄예방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 《※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내용》

- (대상) 공동·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교육연구·노유자·수련·관광휴게시설, 편의점 및 준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 (설계기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물 용도별 내·외부 설계 기준 제시
- ※ 건축물 용도별로 출입구, 담장, 경비실, 부대시설, 주차장, 조경, 승강기, 창호, 설비 등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 기준 설정

(예) 건축물은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수공간, 선 큰 등) 계획과 옥외 배관 덮개 설치 및 일정높이(1.5m) 이하의 수목 식재 계획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는 내·외부 구분을 위해 바닥 레벨, 재료 차별화, 담장은 자연감시를 위해 투시형으로 설치, 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배치, 지하주차장 자연채광을 위해 선큰·천창 설치 등

② 집회장, 전시장 등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하는 건축물은 천장·벽·바닥 등 실내 공간에 칸막이나 장식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실내건축 기준에 따라야 한다.

◆ 대구에 거주하는 김모양은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갔다가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깨지면서 오른쪽 등과 다리에 유리 파편이 박혀 일주일간 통원 치료함( '12.3월)

◆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강모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앞으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혀 뇌진탕을 입음( '08.4월)

이는 최근 건축물 안에서 증가하고 있는 미끄럼, 끼임, 충돌 등 생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실내건축 제도와 기준 의무화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 실내건축 관련 규정 (법 제52조의2)》

- (정의)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
-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
- (기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국토교통부는 개정 건축법 시행일에 맞추어 실내건축 기준을 고시할 예정으로, 화장실 바닥 등 미끄럼방지 기준과 벽·천정·바닥에

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식물의 재료(방화·흡음성 등)의 기준과 내부 공간에 칸막이를 설치시 그 안전 기준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14.1.1부터 권고사항으로 실내건축 가이드 라인을 운영 중에 있다.

《※ “안전한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내용》

- (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설계기준) 실내건축 안전기준 적용 방법, 건축물의 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별로 안전기준을 규정
- ※ 미끄럼사고, 추락사고, 충돌사고, 끼임사고, 넘어짐 등 기타 사고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준을 설정
- (예) 층고 2.1m 이상인 계단과 복도, 노유자 시설의 진입부, 공용계단 및 복도의 바닥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③ 철탑·광고탑 등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마다 공작물의 유지·관리 점검표(부식·손상상태 등)에 따라 점검하고,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공작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 태풍시 노후 철탑 등 붕괴로 건축물과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태풍 곤파스( '10), 볼라벤( '12) 시 교회·골프장 철탑 등 공작물의 붕괴사고 피해 발생

④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00도 00시 K씨는 1층의 다가구주택 1세대를 무단으로 2세대로 늘려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으나, 인근의 3개층 전체에 걸쳐 여러 세대 늘린 곳과 금액이 비슷해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이행강제금은 위반규모와 관계없이 전체면적으로 산정한다고만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하다.

◆ 00도 00군 P씨는 몇 년전 구입한 주택에 위반이 있다며 최근 군청으로부터 위반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P씨는 위반여부도 모른 채 구입하였으며 더군다나 전 소유자가 저지른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라고하니 억울하다는 생각이다.

첫째,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다.

현재는 대수선(가구수 증설 등) 위반, 도로 및 일조높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은 건축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영향을 주는 위반 사항(구조, 피난·방화기준 등)은 현행대로 전체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둘째, 위반행위의 고의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前소유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임대료 사실상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제금을 20%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읍·면지역 등은 건축조례로 이행강제금을 2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조기시정 유도를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1회차, 2회차까지 20% 감경하여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금년 11.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화 : 044-201-3763, 3764, 팩스 044-201-5574)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3



##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 ▶ 대한주택보증,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 최초 시행
- ▶ 분양대금 보호 뿐만 아니라, 저렴한 중도금 대출지원도 가능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 되어 납부한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금융기관, 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오늘 8.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최근 1~2인 가구에 대한 임대 수요 증가 등으로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에 비해 분양계약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고, 중도금 등 금융지원이 활성화되지 않아 지속적인 제도 보완요구가 있어왔다. \*

올해 두 차례 주택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보증제도 시행 요청(4. 16, 6. 5, 국토부장관)

새롭게 시행되는 보증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주택법상 일반주택은 선분양시, 분양 보증이 의무화되어 있어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나,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보증 없이 통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건설사 부도시, 분양계약자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재산 처분금액이 하락할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지 못하거나 환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한계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보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 부도시, 공기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신속한 보증 이행을 통해 분양계약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공사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

또한, 그간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중도금 대출시, 과도한 금융이자(4~6%대)를 부담해왔으나,

오피스텔 중도금대출보증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사 신용과 무관하게 보다 저리의 중도금 자금(3% 중후반)을 지원받게 되는 한편,

건설사는 사업기간 중 중도금 비중을 높힐 수 있어 공사대금 등 사업장 유동성에 한결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 오피스텔은 중도금대출보증 제도가 없어 아파트에 비해 중도금대출 금리가 높고(3%후반 vs. 4~6%대), 중도금 비중도 낮음(60% vs. 20~50%)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준공이후 대부분 임대로 활용되는 오피스텔 특성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간임대 공급이 확대되고, 나아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38



## BEMS KS 제정 ! 세계 최초로 산업 표준화 !

▶ 건축·에너지·ICT 융합 건물에너지관리 신시장 개척 시동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건물내 각종 에너지 사용정보를 센서·계측기로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정보를 분석하여 에너지사용을 최적화·제어하는 시스템

건축기술(CT), 에너지기술(ET),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대해 세계 최초로 표준화 기준이 마련되어 BEMS 기술개발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주춧돌이 놓여진다.

\* (CT) Construction Tech., (ET) Energy Tech.,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해 10월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제정신청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안이 제정절차\*를 완료하고 '14년 8월 4일 제정·고시\*\*되었다고 밝혔다.

\* 공청회, 제정예고, 의견청취, 전문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심의

\*\* KS F 1800-1(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4-0338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제부 : 기능과 데이터 처리절차

선진화될수록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비율\*이 높아지고, 건물의 전생애 단계에서 신축·폐기 비용보다 유지관리비용이 월등히 높아 세계적으로 건물에너지관리 효율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 (한) 약 20%, (선진국) 약 40%

최근 국내에서도 IT업체, 냉난방기기 생산업체, 건설업체, 건물관리업체 등 다양한 산업계와 건축주 등 일반국민 사이에서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BEMS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정의도 제각기 다르고, BEMS 설치업체마다 운영방식 및

통신체계 등이 달라 호환성이 떨어져 BEMS에 대한 산업표준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 (설문조사, 전문가 등 501명) BEMS 산업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 ① BEMS 개념정립과 원활한 소통(29%), ②전문인력 양성(23%), ③통신프로토콜 통합(13%)

이에 건물부문 에너지절약을 소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표준원, 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KS(안)을 마련하고, BEMS협회 등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BEMS KS를 제정하게 되었다.

금번에 제정된 BEMS KS는 제1부로 기본개념, 기능, 데이터 처리절차 등을 정의하는 일반 요구사항의 수준이지만, BEMS에 대한 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관련기술 개발 집중도 및 상호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후속 KS\*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향후 BEMS KS의 완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완료)제1부 기능과 데이터 처리절차, (예정)제2부 건물에너지 절감효과 평가, 제3부 대상설비 및 관제점 명명, 제4부 시스템 구성체계, 제5부 운영체계 및 상호운용성

또한, BEMS KS를 통한 관련 산업발전 및 BEMS 보급 활성화로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드로이드와 같은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 신시장이 개척된 것처럼, BEMS 표준화를 통해 개방형 플랫폼을 마련하여 국내 BEMS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2



## “연말까지 고속도로·국도 42개 구간 384km 개통”

▶ 부산-냉정 구간 확장 완료----차량 소통 원활해져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2014년에 고속도로 2개 구간 71km와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광역도로 등 40개 구간 313km를 확장·신설하여 개통할 예정이다.

금년 개통으로 인해 도로별 발생하던 상습지정체가 해소되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줄어들며,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지역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개통되는 도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냉정 구간 53km 확장 개통되고, 동서6축 음성-충주 구간 18km가 신설된다.

부산-냉정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통행속도가 약 20km/h(60→80) 향상되어 남해선·중앙선의 지정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충주 고속도로는 내년 개통예정인 충주-제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평택부터 제천까지 동서방향 간선도로망을 구축하게 된다.

국도는 32개 구간 264km가 확장·개통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동두천에서 의정부를 연결하는 국도3호선 27km 전구간\*이 개통되어, 양주 덕정·고읍 택지지구 지역주민의 출퇴근 시간대 상습 지정체가 크게 해소될 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기업들의 물류수송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 국도3호선 : 장암-자금 8.1km, 자금-회천 12.6km, 회천-상패 6.2km

국도4호선 경주-감포 구간 18km가 확장·개통됨에 따라 주말 및 휴가철에 경주지역으로 가는 길이 한결 여유롭고 안전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와 서해안고속도로 및 호남고속도로를 동서축으로 직접 연결하는 국도30호선 부안-태인 19km가 4차로로 신설됨에 따라, 새만금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물류지원 기능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서울-부천시를 연결하는 여월택지-남부순환 등 광역도로 2개 구간, 대구광역시 신천좌안 혼잡도로 1개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총북 가금-칠금 등 5개 구간이 올해 말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완공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지역 간 연결을 위한 도로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지역의 상습 지정체 해소 및 낙후지역의 도로망 구축 등에 투자를 집중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시급하고 편리한 도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  
(044)201-4719



## 국토부, 전국 대형 굴착공사 현장점검 실시

▶ 싱크홀 예방대책-----관계기관 합동T/F도 본격 가동키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최근 서울시 석촌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싱크홀 및 공동(空洞)이 지하철 9호선 건설을 위해 석촌 지하차도 하부를 통과하는 터널공사가 원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8월 18일부터 8월 말까지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 지난 8월 5일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앞에서 폭 2.5m, 깊이 5m, 연장 8m의 싱크홀이 발생
- \*\* 8월 13일 도로함몰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 5~8m, 깊이 4~5m, 연장 70m의 공동이 발견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반공학회 등의 전문가들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재 전국에서 시행되는 지하철공사와 도심지의 대형 건축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지반·지하수 변위, 굴착 안전성 등 시공상태,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등을 1차적으로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현장은 물리탐사 전문가를 투입하여 지표면 투과 레이더(GPR\*) 탐사, 보링(Boring) 조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Ground Penetrating Radar

이와 함께, ‘싱크홀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시개발이나 건설공사 시 시행하는 지반구조나 지하수 흐름에 대한 사전조사와 예방대책 수립 등 현행 제도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개선하고

토질특성과 지하수위의 상관관계, 지하시설물 매립後 다짐기준 등 싱크홀 예방에 필요한 설계 및 시공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싱크홀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싱크홀의 징후와 행동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 (예)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때, 건물벽·도로·기표면 등에 균열발생 등

각종 인·허가 및 건설공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보유한 7대 지하시설물 정보와 각종 건설공사를 하면서 실시한 시추정보를 DB화하여 지자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 7대 지하시설물 :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T/F에는 서울시·부산시 등 지자체와 환경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무조정실도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3574



##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간소화, 임대주택용지 탄력적 공급 허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지침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절차 간소화, 도시개발채권 매입 금액 경감, 공동주택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 비율 탄력성 부여 등이다.

먼저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 시행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또한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하여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 공사도급계약금액의 5/100→3/100, 시행·허가면적 3.3㎡당 30,000원→20,000원

한편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수요에 맞는 적절한 공동주택용지와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2일 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 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전화 : 044-201-3735 ~ 3736, 팩스 044-201-5569)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35



## 2014 건설사업관리(CM) 능력평가 결과 한미글로벌 6년 연속 1위 차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4년도 건설사업관리자 CM능력을 평가한 결과, (주)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가 374억 원의 수주실적으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29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두단계 상승하였고, 3위는 (주)삼안이 215억 원의 실적으로 지난해보다 9단계나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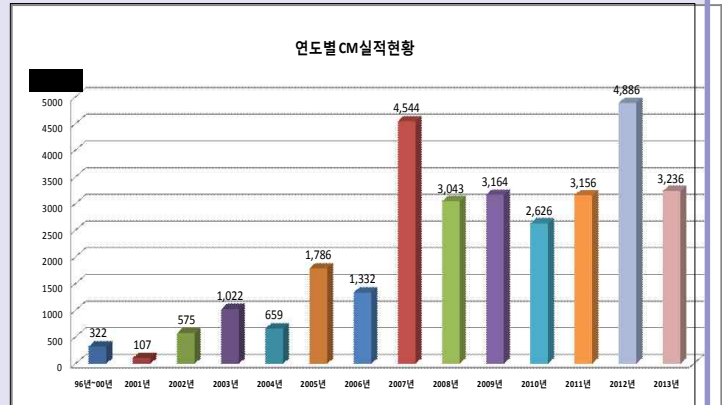
\*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 건설사업관리자가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설계, 시공관리, 감리, 사후관리 업무 시행

올해 CM능력 평가·공시는 CM사업 수행업체 158개사 중 평가를 신청한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3년 CM실적은 3,236억 원으로 2012년 4,886억 원보다는 줄었지만,

초대형 국책사업\*를 제외하면 다소 증가한 수준으로서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CM확산 추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1단계: '07년 2,572억, 2단계: '12년 1,680억)



CM능력 평가·공시제도는 발주자가 공사비절감, 공기단축, 품질확보 등을 위해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년도 CM실적, 건설공사실적·엔지니어링사업실적·감리용역실적 및 건축설계실적, 인력보유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등 9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를 매년 8월말에 공시한다.

2013년도 구체적인 CM 실적은 아래와 같다. 지역별로는 국내 2,804억 원(87%), 해외 432억 원(13%)으로 주로 국내에서 건설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민간 분야 2,039억 원(63%), 공공 분야 1,197억 원(37%)으로 민간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공종별로는 건축 부문 2,948억 원(91%), 토목 및 환경산업설비 등 기타부문 288억 원(9%)으로 건축 부문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M관련 전문인력 보유현황(2013.12.31현재)을 살펴보면, 100명 이상 업체가 41개사(77.4%)로 대부분의 CM사들이 CM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업체별 자산규모는 100억 원 이상 업체가 37개사(69.8%)로 주로 대형용역업체 및 건설업체들이 CM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CM능력 평가·공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월 29일부터 한국CM협회 홈페이지([www.cmak.or.kr](http://www.cmak.or.kr))나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http://www.kiscon.net))에서 볼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12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 직전 고시('14.3.1) 대비 1.72% 상승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4.9.1일부터 1.72% 오른다.

\*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고시하여야 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이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며,

※ 노무비: 3.62% 상승 ⇒ 기본형건축비 1.228% 상승  
 - 형틀목공 8.45%, 배관공 7.67%, 보통인부 2.99%, 내선전공 3.76%  
 ※ 재료비: 0.015% 상승 ⇒ 기본형건축비 0.006% 상승  
 - 레미콘 0.01%, 철근 0.02%, PHC파일 △ 0.12%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69 ~ 1.0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 지난 3.1일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 9.3만원 상승 (544.2만원 → 553.5만원)

이번 개정된 고시는 9.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0



## 아파트 '부실감리', '관리비리' 신고창구 개설!

▶ '14. 9. 1일부터 국토부 내에 신고 센터 설치운영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건설 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9.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부실시공, 허위 검측이나 뇌물수수 등의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가 적발되어 사회적 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제도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주민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 부족,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의 각종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 이지만,

이와 관련한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행 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 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감리, 아파트 관리 부분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 도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신고 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 세스를 구축하였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 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 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전화: 주택감리(044-201-3379),  
아파트 관리(044-201-4867)  
팩스: 공통(044-201-5684)

< 신고 대상(예시) >

- 주택감리 부문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감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 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체나 시공자에게 위법한 내용의 공사진행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등

- 아파트 관리부문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를 경쟁입찰 등 주 택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등
- ※ 신고대상이 되는 각 행위를 한 증거자료를 제시하 여야 함

센터에서는 전화, 팩스로 신고사항을 접수(신 고대장에 기재)하여 관련법령에의 위법성 여 부 등을 검토하고, 신고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도·감독권이 부여되어 있는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해당 신고사항을 조 사하여 보고(1개월 이내)하도록 조치하고, 지 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에 따라 처벌 등의 적 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 에 신고인(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 정이다.

- \* 부실감리: 시공자의 잘못을 묵인한 경우 감리자 교체 및 입찰참여 제한, 고의 등으로 감리업무 를 게을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 \* 아파트 관리: 부정한 재물·재산의 취득·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비리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행위 가 묵인되거나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사· 처리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정부 차원의 신고 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관리와 관련된 각종 부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 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 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 국토교통부 통계정보가 한눈에 “쏙”

▶ 국토교통통계누리를 사용자 중심의 기능으로 새 단장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원하는 통계를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통계포털(‘국토교통통계누리’, <http://stat.molit.go.kr>)을 새롭게 단장하여 9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

방문자 수 연 14만 명 이상인 국토교통통계누리는 국토, 주택, 토지, 수자원, 도로, 교통, 항공, 철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92종의 국토교통부 관련 통계를 한 곳에 모아 서비스하는 공간이다.

이번 개편에서는 통계자료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고, 주요화면은 최신 트렌드에 맞춰 디자인을 단순화하였다.

국토·도시, 주택·토지 등 7개 분야를 주요화면 중앙에 배치하여 원하는 통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접근경로를 단순화하여 한 번의 클릭으로 원하는 통계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기능으로 개선하였다.

※ 특히, 활용도가 높은 주 메뉴 통계마당의 서브메뉴인 ‘분야별통계, 부서별통계, 명칭별통계, 지역별통계, 영문통계, 통계연보’도 주요화면에 별도 아이콘으로 배치하여 한 번 클릭으로 해당 콘텐츠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국토교통통계포털에 사용자가 제안한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사용자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통계활용 자료 등을 소개하는 코너를 신설하는 등 포털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IV. 재해대책의 현황

### 6. 화산 재해대책

#### (1) 일본에 있어서의 화산 재해

일본은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하는 화산 국가이며, 전 세계의 약 10%에 해당되는 108개의 활 화산이 국내에 있고, 과거에도 분화 등 활발한 화산 현상으로 인해 때로는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2000년의 우스산과 미야케 섬, 2011년의 기리시마산(신모에산)의 분화로 많은 주민들이 피난한 적이 있습니다.

화산의 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은 다양각색이며, 특히 분화 발생으로부터 피난까지의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고, 생명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현상(분석, 화산 분출물, 용설형 화산니류)은 방재대책에 있어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산 재해로부터 주민 등의 생명을 지키는데 있어서 분화의 전조현상을 포착한 적절한 정보의 발표와, 정보를 받은 즉시 주민 등을 신속히 피난시키는 광역적인 연계 체제가 중요합니다.

#### (2) 연속 감시 화산과 분화경보

기상청에 의해 47개 화산 (유식자나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화산 분화 예지 연락회에서 선정)의 화산활동에 대해서는, 지진계, 망원 카메라, 경사계 등 관측 기기를 사용한 24시간 연속 감시 체제가 갖추어져 있으며, 거주지역이나 분화구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분화의 발생이 예상되었을 경우에는 분화경보가 발령됩니다.

이들 중 특히 29개 화산 (2011년 2월 기준)에 대해서는 분화경보를 통해 분화구에서 거주지역까지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화산활동의 활동 상황을 「피난」, 「피난 준비」, 「입산규제」 등 취해야 할 방재행동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5단계로 구분된 「분화 경계 수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일본의 화산 재해 사례

발생년	화 산 명	사망자 수	발생한 현상 등
1707	富士山(후지산)	대량의 사자	분출물이 두껍게 퇴적 도교에 대량의 화산재가 내림
1741	渡島大島(오시마오시마 섬)	2,000명 이상	산체 붕괴로 인한 쓰나미
1779	桜島(사쿠라지마 섬)	150명 이상	분석·용암류 등
1783	浅間山(아사마산)	1,151명	화쇄류·화산니류·홍수
1785	青ヶ島(아오가시마)	130~140명	50 여년 동안 무인도가 됨 (섬주민 40% 이상이 사망함)
1792	雲仙岳(운젠산)	약 15,000명	산체 붕괴·쓰나미
1822	有珠山(우스산)	82명	화쇄류
1856	北海道駒ヶ岳 (홋카이도 고마가다케산)	20명 이상	낙하 경석·화쇄류 (경석류)
1888	磐梯山(반다이산)	477명	산체 붕괴로 인한 암설류

발생년	화 산 명	사망자 수	발생한 현상 등
1900	安達太良山(아다타라산)	72명	유황 채굴소 완전 붕괴
1902	伊豆鳥島 (이즈토리시마 섬)	125명	모든 섬 주민이 사망
1914	桜島(사쿠라지마 섬)	58명	분석·용암류·지진
1826	十勝岳(도카치산)	144명	화산니류
1952	ベクネース列岩 (베요네스 열암)	31명	해저분화
1991	雲仙岳(운젠산)	43명	화쇄류

### 사쿠라지마 섬의 모습



- 2013년 당해년도 500번째 화산분화가 있었던 8월18일 분화는 화구에서 연기가 상공 5,000m 까지 치솟았음.

#### (3) 화산 방재 협의회, 화산 해저드 맵, 피난계획

2008년 3월에 내각부 등에 의해 마련된 「분화시 등의 피난에 영향을 미치는 화산 방재체제 지침」에 입각하여, 이하와 같은 대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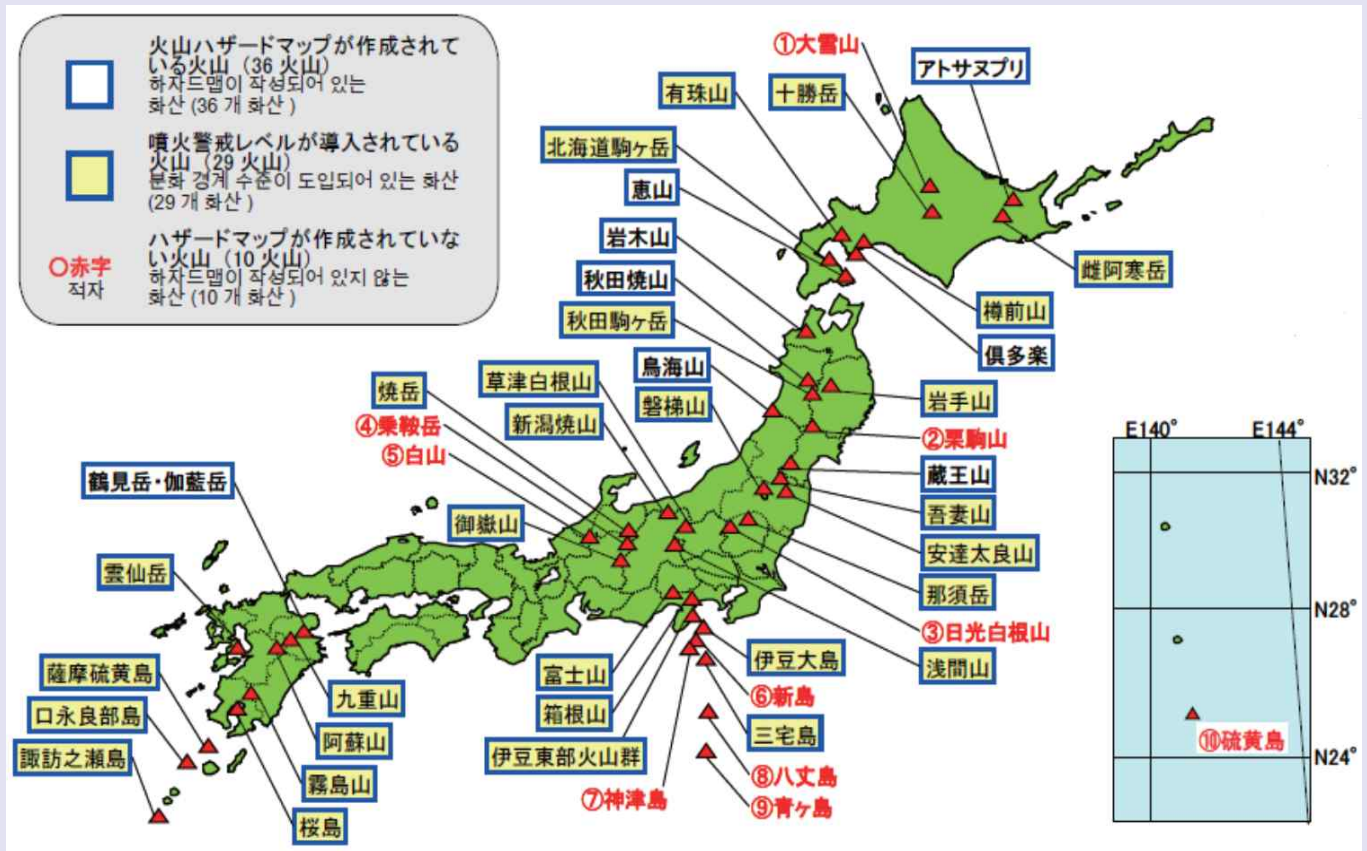
- ① 각 화산의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광역적 인 연계체제로서 「화산 방재 협의회」가 24개 화산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도부현, 시정촌, 기상대, 사방부국, 화산 전문가 등은 「코어그룹」을 구성하여 화산 방재 협의회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② 화산 방재 협의회에 의해, 복수의 「분화 시나리오」에 따라, 분화 현상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위험 구역을 표시한 「화산 해저드 맵」이 40개 화산에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 ③ 화산 방재 협의회에 의해, 「분화 경계 수준」 도입을 위한 방재 대응이나 피난 대상지역이 설정되고, 피난개시 시기나 피난 대상 지역·경로·수단을 정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피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4) 활동화산대책 특별조치법에 입각한 대책

화산 현상으로 인해 현저한 피해를 입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있어서, 활동 화산 대책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피난시설 긴급정비지역이나 화산재 방제 지역의 지정에 입각한 시설 정비 등 특별조치가 강구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기준으로, 사쿠라지마섬, 아소산, 우스산, 이즈오시마섬, 도카치산, 운젠산, 미야케섬 및 기리시마산의 주변 지역에서 동법에 의거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47개 연속 감시 화산의 재해 해저드 맵이나 분화 경계 수준의 정비 상황



### 분화 경보등과 분화 경계수준의 47개 화산에서의 화산 해저드 맵 작성상황

경보명칭	대상범위	분화 경계수준	키워드
분화경보	거주지역과 그 주변의 분화구측	레벨5	피난 
		레벨 4	피난준비 
분화구 주변경계	화구에서 거주지역 가까이 까지 광 범위의 화구주변	레벨 3	입산규제 
	화구에서 약간 떨어진 곳 까지의 화구주변	레벨2	분화구 주변 
분화예보	하구 내부 등	레벨 1	정상 

## 7. 풍수해 대책

### (1) 일본에 있어서의 풍수해

일본은 태풍이나 기상전선 활동 등 기상조건, 가파르고 험준한 지형이나 급경사 하천 등 지세조건, 대부분의 도시가 총적평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토의 약 10%에 해당되는 상정 범람 구역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회적 조건이 겹쳐져, 홍수, 토사재해, 해일, 풍해 등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국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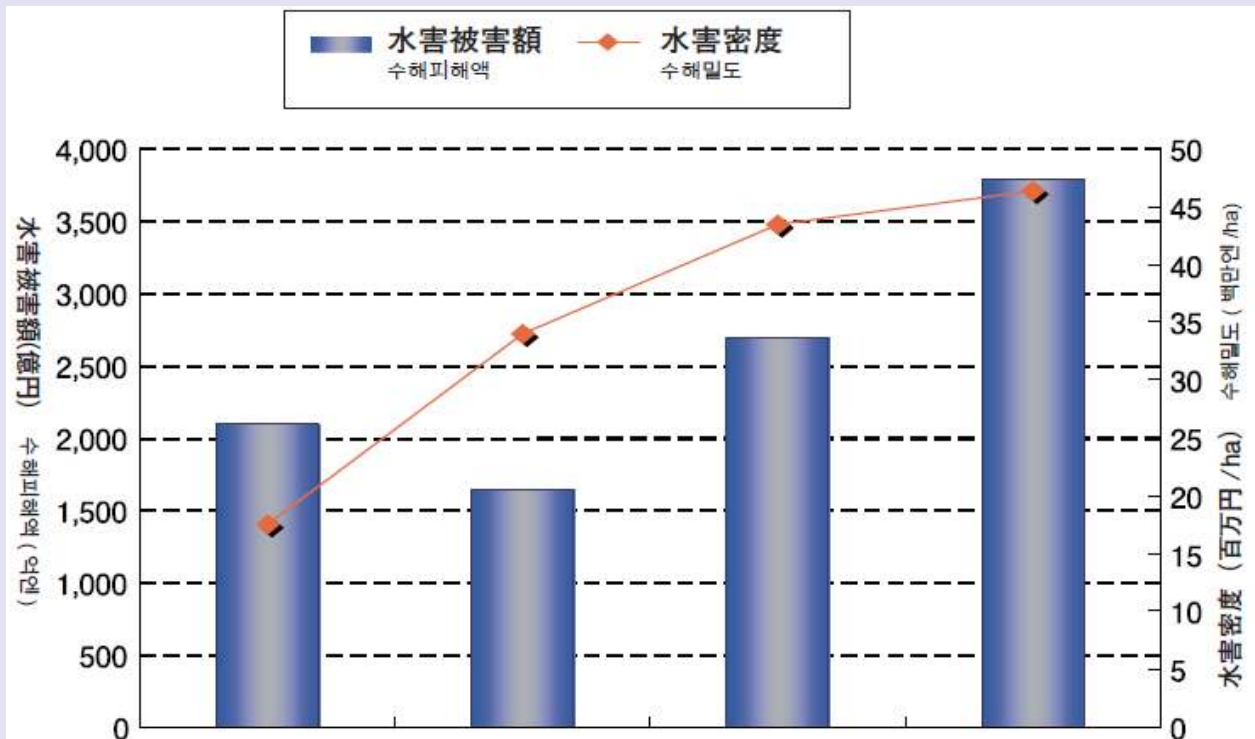
오랫동안에 걸친 치산·치수사업 등을 통해 수해로 인한 침수면적은 대폭 감소되고 있는 반면, 하천 범람 구역내에 대한 자산의 집중·증대에 따라 침수면적 당의 일반 자산피해액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 추세로서 1시간 강수량이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2) 관측 체제

풍수해를 가져오는 기상현상에 대해서는 기상청에서 강수량이나 풍속 등을 자동으로 관측하는 지역 기상관측 시스템 (アメダ스아메다스)과 기상 레이더, 기상 위성 등을 통한 관측이 실시되고 있으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예보·경보가 발령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부터는 시정촌마다의 기상경보·주의보 발령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강수량 및 하천의 수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 및 도도부현에 의해 목시와 기계, 게다가 원격지에서 자동관측된 데이터를 무선 송신해 관측하는 텔레미터 시스템에 의한 관측이 실시되고 있으며, 홍수 예보나 수위 정보가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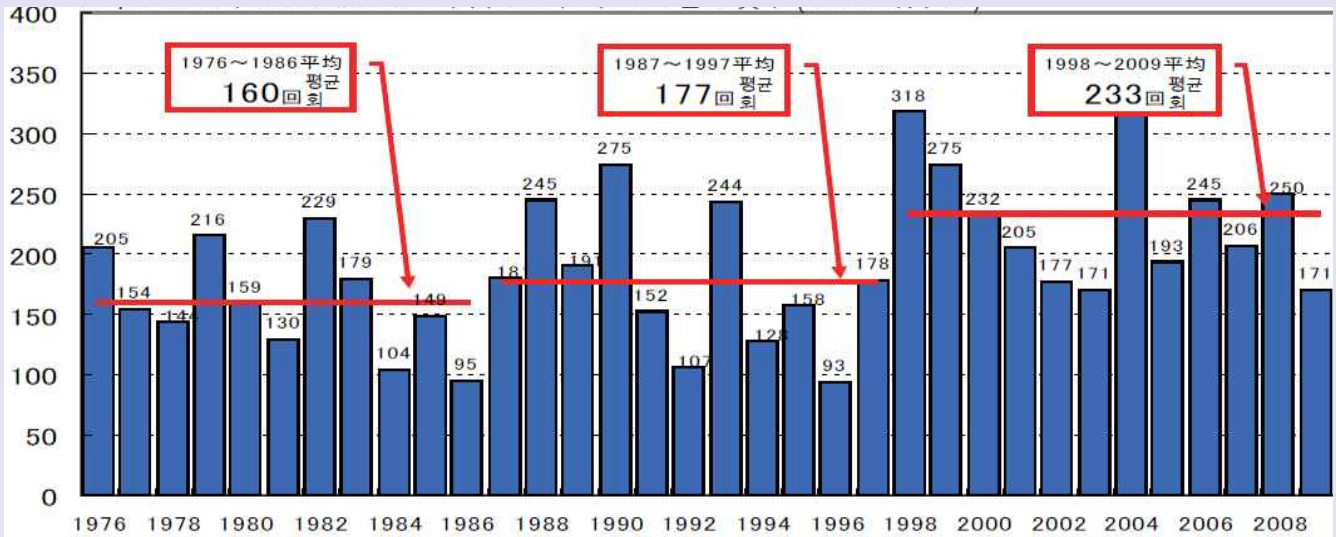
### 일반 자산의 수해피해 및 수해밀도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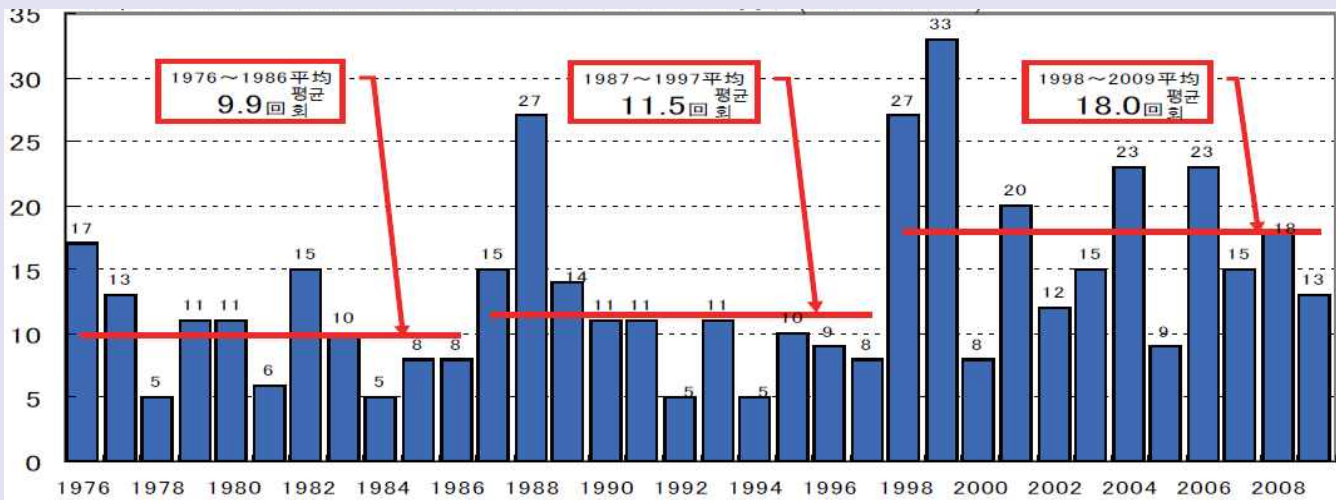
주) 수해밀도면적 : 수해면적(수해로 인한 「택지 기타」의 침수면적) 당의 일반자산 피해액  
 자료 : 국토교통성 하천국 「수해통계」를 기초로 내각부에서 작성

## 집중호우의 증가 추세

1시간당 강수량 50mm 이상의 집중호우의 연간 발생횟수(1000 지점당)



1시간당 강수량 80mm 이상의 집중호우의 연간 발생횟수(1000 지점당)



- \* 1시간 강수량의 연간 발생횟수
- \* 전국의 약 1,300 지점의 아메다스로 집계
- \* 1,000 지점당의 횟수

### (3) 종합적 풍수해 대책

풍수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천·댐이나 하수도의 정비 등 하드웨어 측면의 대책과, 재해 해저드 맵 작성이나 재해정보 제공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대책을 일체적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나 토사재해에 대한 소프트웨어 대책으로서, 수방범이나 토사재해 경계구역 등에 있어서의 토사재해 방지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침수상정구역이나 토사재해경계구역에서의 경계 피난 체제 정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이들 법률이 개정되고, 재해 해저드 맵에 의한 주지 철저화나, 고령자 등의 재해시 요 지원자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 전달방법을 시정촌지역 방재 계획으로 규정하는 등 대책 강화가 도모되었습니다.



수방법에 의거하여, 홍수 예보 하천은 368개 하천, 수위주지 하천은 1,488개 하천이 각각 지정되고 있으며, 지금은 그 중에서 1,768개 하천의 침수 상정 구역이 지정·공식 발표되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기준).

또한, 해당 구역을 포함하는 시정촌에서, 홍수재해 해저드 맵의 작성·보급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1,137개 시정촌에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2010년 2월기준).

#### (4) 대규모 수해 대책

최근의 집중호우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대규모 수해 발생을 전제로 한 신속하고 확실한 피난구원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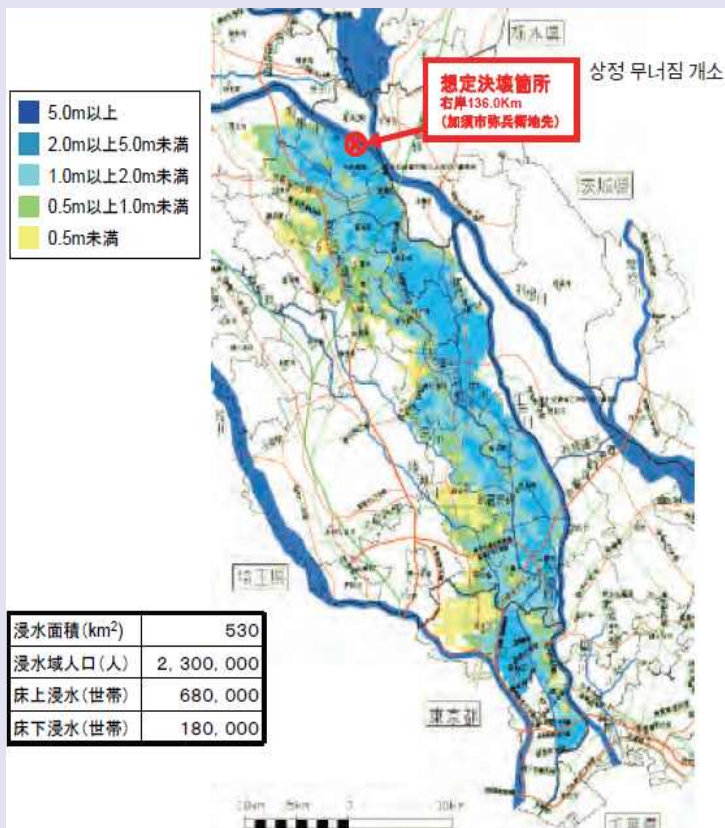
중앙방재회의에서는 수도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는 도네가와 강, 아라카와 강에서의 제방 붕괴 등으로 인한 수해를 대상으로 복수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피해규모 상정을 2008년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중, 도네가와 수도권 광역 범람의 피해상황은, 사망자가 최대 약 2,600명, 고립자가 약 110만명으로 상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의 경감을 위해 중앙방재회의에서는 대책 대강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네가와(利根川) 수도권 광역범람의 침수 상정(1/200년)

- 펌프운전 : 없음. 연료보급 : 없음. 수문조작 : 없음. 펌프카 : 없음



(2010년 10월 아미미 지방호우) 가고시마현 아미미시 스미요초의 피해상황



### (1) 일본에 있어서의 설해

일본은 가파르고 험준한 산맥으로 이루어진 반달 모양의 열도이며,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방면에서 찬 계절풍이 불어오고, 동해(日本海)에는 남쪽에서 오는 난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동해 연안 지방에는 다량의 강설·적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에 쌓인 눈을 제설하는 작업 중에 전락되는 사고를 당하거나, 눈사태 재해 외에 강설 및 적설로 인한 도시 기능 마비, 교통 장애 등 설해가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2006년 폭설이라고 명명된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친 겨울철에는 동해 연안의 각지에서는 폭풍을 수반한 대설이 강습하고, 지붕 제설 작업을 하던 중의 전락사고나 낙하된 눈으로 인한 사고, 부서진 가옥에 깔리는 사고 등으로 2차대전 이후 2번째로 많은 152명의 인명피해를 내는 재해를 경험했습니다. 2007년 겨울에는 47명, 2008년 겨울에는 21명, 2009년 겨울에는 56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각각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 (2) 설해 대책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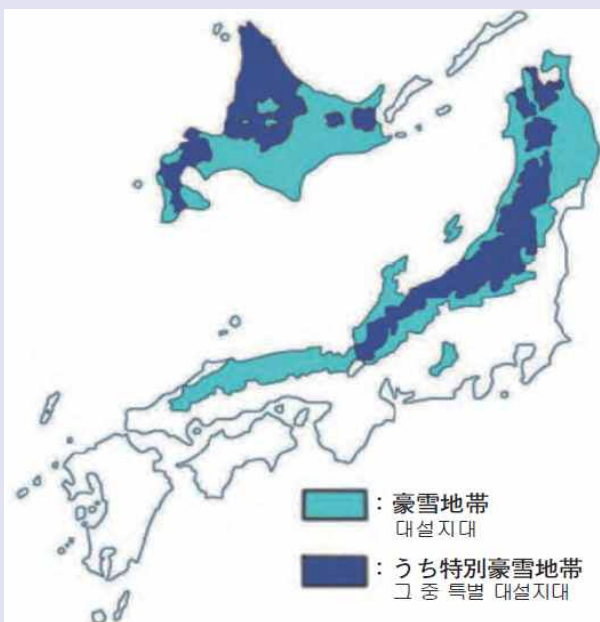
대설 시에는 인명사고 방지, 눈사태 경계 체제 강화, 도로교통 확보를 위한 제설 등 대책이 강구됩니다.

눈사태에 대해서는 집락을 보전 대상으로 한 눈사태 대책사업 추진, 위험한 곳에 사는 주민에 대한 주지 철저화, 경계 피난 체제 강화 등 종합적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설지대대책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국토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대설지대」에서, 교통·통신 확보, 농림업 대책, 생활환경시설이나 국토보전시설의 정비 등 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붕 제설 등 제설작업 중의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하여 제설 중의 사고 방지대책의 요점을 정리한 팸플릿을 작성하여 시정촌을 중심으로 유관단체·기관 등을 통해 보급 계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설지대 및 특별대설지대 지정구역



2006년 대설 시의 자위대에 의한 지붕 제설

■ 자료 : 지방건설기술심의회 김 대 유  
(주)덕성 부회장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 입법예고일 : 2014. 8. 20.(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42호)
- 예고기간 : 2014. 8. 20. ~ 2014. 9. 1.

#### □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580호, 2014.5.14. 공포, 11.1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자본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안 제13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 '휴업 등으로 등록말소 시 1년 6개월간 등록 금지' 조문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 정비

##### 나. 경험 많은 우수 건설업체에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안 제16조)

능력 있는 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동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면제(보유업종 자본금 기준의 50% 범위내)

##### 다. 공공기관 범위 규정(안 제34조의3, 안 제34조의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으로 규정

##### 라.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 관련(안 제82조의3, 안 제82조의4, 안 제82조의 5)

- 1) 상습체불업자 사망·실종, 체불 대금 전액 지급, 체불 대금 지급계획 소명 등 심의위원회에서 제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상습체불업자 공표 대상에서 제외
- 2) 공표 방법은 관보에 고시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건설산업정보망에 3년간 게시
- 3)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마.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실태조사 권한 등 위임(안 제86조)

건설업체의 하도급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실태조사 권한과 실태조사 관련 제재 처분(과태료 등)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

바.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의 등급 표기 명확화(안 별표 2)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시행되어 건설기술자 인정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분에 혼란이 없도록 건설기술자의 해당 등급을 명확히 표기

## □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97, 3515 팩스 : 044-201-5546

■ 자료 : 국토교통부

##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입법예고일 : 2014. 8. 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33호)

□ 예고기간 : 2014. 8. 4. ~ 2014. 8. 25.

□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구조에 관계없이 반자높이를 일원화 시키고, 설계 기본 치수단위를 '13.7.15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맞춰 조정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반자높이 일원화(안 제21조제1항)

○ 공동주택의 구조에 관계없이 반자높이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2.2m 이상으로 일원화

\* 철근콘크리트벽식 2.2m 이상, 라멘조 및 철골조 2.4m 이상

나. 설계 기본 치수단위(모듈) 개정(안 제15조, 제20조제1항)

○ 수평계획모듈격자간 치수를 1M 증분치에서 M/2 증분치로 조정

다. 기타 오기 정정(안 별표 1)

○ 단지조감도 축척 삭제 및 용어 정비(용적율→용적률)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 자료 : 국토교통부

##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4. 8. 25.(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72호)

□ 예고기간 : 2014. 8. 25. ~ 2014. 9. 17.

□ 개정이유

댐 건설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이전하여 조성하는 지역을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에 포함하고, 고도지구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국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 확대(지침 3-2-9-1-(2) ⑥ 신설)

- 1) 자연취락지구는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로서 신규로 조성하는 주택단지는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댐 건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존 자연취락지구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주민의 불편이 가중됨
- 2) 기존 자연취락지구가 댐 건설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성되는 경우도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에 포함하여 이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

나. 고도지구 결정조서에 건축물 높이 기준을 명시(서식 3-다 개정)

고도지구내 건축물의 건축높이 계산은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지침 본문에서 규정(3-2-4-3)하고 있으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상에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이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비교란에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을 명시

□ 의견제출

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2014년 9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708, 3713 / Fax 044-201-5569

■ 자료 : 국토교통부

##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연결허가 시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의 허가면적

### □ 질의요지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법」 제 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한지?

### □ 회 답

숙박시설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경상남도 지방도에 대한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받은 경우, 연결허가 면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 도로점용료를 면제받는 상수도의 이설공사 비용 부담자

### □ 질의요지

구 「도로법」(2014. 1. 1.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어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은 점용허가 시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되, 같은 법 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바,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 □ 회 답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구 「도로법」(2014. 1. 1.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어 7. 1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2조에 따라 도로점용료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광역상수도의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광역상수도의 점용허가 시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당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자료 : 법제처

## 액압성형된 내부식 이중복합관을 이용한 분할 클램프 연결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신이피엔씨(주)
	현대하이스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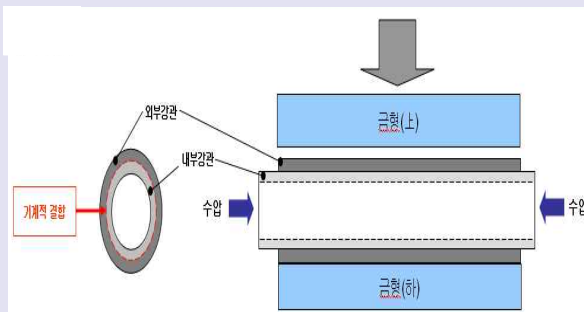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35호
- 기술분류 : 기계설비>건설기계>배관설비  
토목>상하수도>상수도관로 설치 및 유지 보수
- 내용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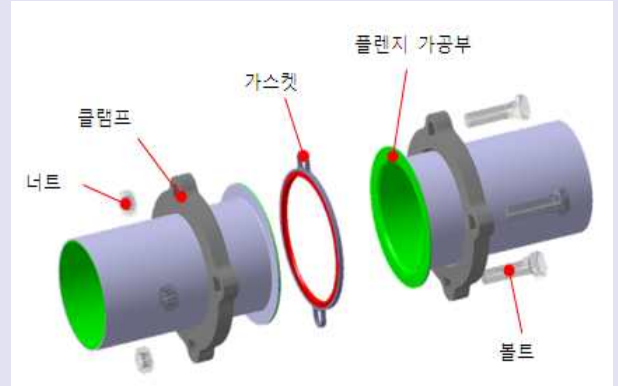
최근 수도관에는 청녹 현상이 발생하는 동관이나 내구성이 약하고 환경호르몬 발생이 우려되는 폴리에틸렌관 보다 녹슬지 않은 스테인리스 강관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스테인리스 강관은 높은 원가 및 용접연결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탄소강관에 얇은 두께의 스테인리스 강관을 삽입한 후 고압의 액압으로 성형하는 이중복합관을 신기술로 개발하였다.

관의 연결에 있어서는, 관의 양단을 가공하여 플랜지 형상으로 만든 뒤 클램프를 이용하여 볼트와 너트로 체결하는 무용접 방식의 연결공법을 개발하였다.



《이중복합관 제조기술 모식도》



《이중복합관 분할 클램프 연결공법》

이중복합관은 기존의 일반 스테인리스 강관과 동일한 내식성을 가지면서 제품 단가를 30%가량 낮출 수 있으며, 무용접 방식의 관 연결로 용접방식보다 공사기간 50% 단축이 가능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성이 높다.

이 신기술은 저렴한 가격으로 내부식 배관에 적용이 가능하여 수도 배관용 및 소방관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압의 액압을 이용하여 외부의 탄소강관과 내부의 스테인리스강관을 기계적으로 접합시킨 내부식 이중복합관의 관단을 플랜지화 하여 2개로 분할된 클램프로 연결하는 시공기술 (40A~200A)



# 비긴장 강연선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기둥 비내진 접합부 일체형 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에스에이치공사
	(주)포스코건설
	롯데건설(주)
	동서피씨씨(주)
	삼표피앤씨 주식회사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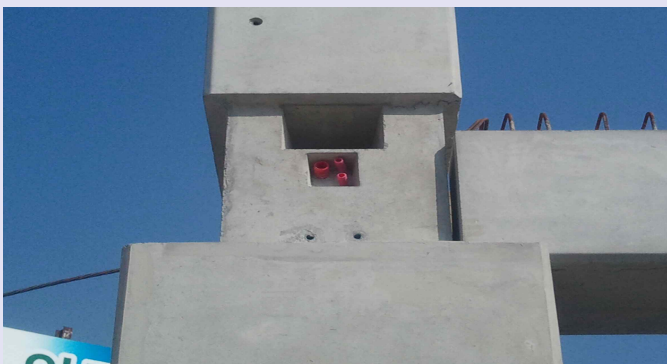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36호
- 기술분류 : 건축>철근콘크리트>PC
- 내용요약

건축물 공사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은 보, 기둥 등을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므로 시공이 간편하였으나, 보와 기둥 접합부에서 일체성 확보가 어려워 균열이 발생하거나 틈에 의한 누수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가 접합되는 기둥에 관통 홀을 만들어 보의 철근과 강연선을 관통시킴으로써, 기둥과 보의 일체성을 확보하고 시공성을 증대시킨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기둥 접합부에는 거치대를 형성하여 보의 안전한 거치가 가능하게 하였다.



《관통홀이 있는 PC기둥》



《강연선이 설치된 보-기둥 접합부》

기존의 1개층씩 시공하는 방법에서 탈피하여 2개층의 기둥이 1절로 구성되거나 3개층이 1절로 제작되어 지하 2층 또는 3층의 동시 시공이 가능하여 약 15%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 중 많은 부분이 균열보수비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보-기둥 접합력을 증대시켜 균열발생을 줄인 이 신기술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대형구조물의 지하공간 공사현장 등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3층이 한절로 구성된 PC기둥과 연속되는 U자형의 Half PC보의 접합을 기둥 접합면 상부에는 개구부(opening)를 설치하여 철근을 관통·배근하고, 하부에는 설치된 관통홀에 비긴장 강연선을 배근하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기둥 비내진 접합부 일체형 공법

## 2단계로 확장되는 앵커체를 이용한 암반정착 앵커 공법(EIP 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 장평건설
	(주) 삼안
	(주) 포스코건설
	한국건설관리공사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37호
- 기술분류 : 토목>토질 및 기초>사면 관리 및 보강

#### ○ 내용요약

사면안정 및 구조물을 지반에 고정시키기 위해 지반에 구조체를 삽입하는 기존의 앵커 기술은 지중에 앵커체를 설치하고 그라우트(시멘트, 골재 등과 물의 혼합물)를 주입하여 일정한 강도를 확보할 때까지 양생한 후 앵커체를 인장(물체를 잡아당김)하므로 공사기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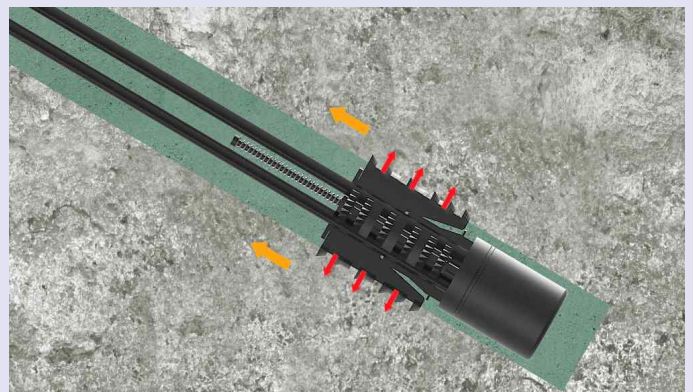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라우트 전 2단계로 확장되는 앵커체로 주변 지반을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필요한 만큼의 인장력을 얻을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천공홀에 앵커체를 삽입하고 잠금핀을 제거하면 코일스프링의 탄성복원력에 의해 록커블록이 1단계로 확장되어 천공홀에 밀착되며, PC강연선을 잡아당김에 따라 록커블록이 2단계로 확장되어 천공홀과의 마찰력이 증대된다.

따라서, 앵커체의 정착길이가 짧아도 충분한 인장력이 발생하며, 인장력 확보 후에 그라우트를 주입하므로 그라우트 양생시간이 불필요하여 기존기술보다 40%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단계 확장앵커》



《확장앵커 정착방법》

산사태와 비탈면 붕괴 등의 긴급 복구현장에서 급속시공이 가능함에 따라 이 신기술의 앵커 공법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코일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1단계로 록커블럭이 확장되고, 인장재에 긴장함에 따라 록커블럭이 이동블럭의 경사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2단계로 확장되어 천공홀 주변에 압력을 가하면서 밀착되는 확장형 앵커체를 정착한 후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연암 이상의 강도를 갖는 암반정착 앵커공법

##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체결 시공기술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동부엔지니어링(주)
	(주)대도엔텍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38호
- 기술분류 : 토목>수자원>보

####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고무보 폭방향(수심방향)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하여 폭방향과 길이방향에 격자형으로 보강포를 배치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고무보의 고무본체와 고무보 보호커버 통합체결 고정구조를 갖는 개량형 고무보의 시공기술이다.

####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무보 폭방향(수심방향) 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고무보의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통합체결 고정구조를 갖는 개량형 고무보 시공기술

## 격자형 철망 고정틀 내부에 삽입된 식생포대에 토석을 채워 시공하는 비탈면의 옹벽녹화 및 하천제방의 호안녹화 조성 기술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솔라원환경기술(주)
-------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39호
- 기술분류 : 토목>토질및기초>옹벽  
토목>수자원>호안조성

####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씨앗이 부착되고 흙을 채울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대형의 식생포대와 철망으로 제작된 격자형 고정틀을 이용하여 고정틀 내부에 삽입 고정된 식생포대에 현장의 토석을 채워 설치되며, 앞면의 식생포대에 초류종자를 부착시켜 식생이 활착되도록 하여 흙깎기 및 흙쌓기 비탈면의 옹벽녹화 및 하천제방의 호안녹화를 조성하는 기술이다.

####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철망으로 제작된 격자형 고정틀 내부에 삽입된 포대에 현장의 토석을 채워 시공되며, 앞면의 식생포대에 초류종자를 부착시켜 식생이 활착되도록 하여 흙깎기 및 흙쌓기 비탈면의 낮은 높이의 옹벽녹화와 하천제방의 호안녹화를 조성하는 기술

#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점착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이용한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외방수공법

##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주)리뉴시스템
-------	----------

##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740호
- 기술분류 : 건축>방수>구체 방수 및 지하 외 방수

###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①친환경+자원재활용 방수재료 및 공법 개발(터보시트 GTR), ②방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하구조물 바닥 부위에 대한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일체 부착형 방수재료 및 공법 개발(Pre-GTR), ③접합부 전용 시공 장비(Joint Roller) 및 취약부 전용 보강 소재(GTR Gel) 개발, ④시공안정성 개선을 위한 별도의 바탕 정리 미실시 및 프라이머 미사용 · 위험요소 제거 방안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방수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한 "온통 GTR 외방수공법"이다.

###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재활용 천연라텍스 고무를 이용하여 제조된 고점착 특성의 '터보시트 GTR'과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Pre-GTR'을 이용한 콘크리트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제9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결과

- 심의일자 : 2014. 8. 29.(금)
- 건 명 : 실시설계 적정성 3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3건
  - 실시설계 적정성 심의 3건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업명	사업개요	발주청	심의결과
2014-09-01	실시설계 (적정성)	의령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 위치 : 의령군 낙서지정공유유곡정곡면 일원 · 사업내용 : 배수지 4개소, 송수관 12.12km 배수관 74.49km, 급수관 109.32km · 사업비 : 312억원(공사비 267, 폐기물처리 등 45) · 사업기간 : 2014 ~ 2017년(4년)	의령군 (환경수도과)	조건부
2014-09-02	실시설계 (적정성)	용산~창아지간 도로개설공사	· 위치 : 창녕군 남지읍 용산리~신정리 일원 · 사업내용 : 도로개설 L=3.74km, B=10.0m · 사업비 : 350억원(공사비 324, 보상비 등 26) · 사업기간 : 2014 ~ 2019년(6년)	창녕군 (건설교통과)	조건부
2014-09-03	실시설계 (적정성)	창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조산리 일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1.25km · 사업비 : 195억원(공사비 116, 보상비 등 79) · 사업기간 : 2014 ~ 2016년(3년)	창녕군 (안전치수과)	조건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심의 3건

의안 번호	안건명	발주청	심의결과
2014-09-04	경상남도 사업분야별(도로, 하천, 도시계획, 도시개발, 상하수도, 방재, 항만·어항, 공원·조경레저, 폐기물, 환경, 블록구축 및 우수율제고)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조건부
2014-09-05	경상남도 사업분야별(도로, 하천, 상하수도, 폐기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조건부
2014-09-06	경상남도 해당분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조건부

## 2014년 제10회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심의일자 : 2014. 9. 23.(화)
- 건 명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4건

의안 번호	안 건 명	발주청
2014-10-01	스피드 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거창군 (산림복지과)
2014-10-02	함안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함안군 (상하수도사업소)
2014-10-03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사천시 (도시과)
2014-10-04	장유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SOQ)	김해시 (건축과)

■ 자료 : 도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를담당  
(055)211-4626

### 계약심사 현황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4년 8월	<b>계</b>		<b>19</b>	<b>22,941</b>	<b>21,796</b>	<b>1,145</b>	<b>4.99%</b>
	공사	토목	7	12,604	11,955	649	5.15%
		건축	4	6,346	5,964	382	6.01%
		기타	1	683	655	28	4.21%
	용역		6	3,209	3,123	86	2.65%
	물품		1	99	99	-	-

■ 자료 : 도 회계과 계약심의를담당  
(055)211-3548

## 2014년 국가기술자자격 검정시행일정

회별	회별	필기시험 원서접수	필 기 시 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 응시자격 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결정 (방 문 제 출)	실기(면 접) 시 험	합격자 발 표
		인 터 넷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 (인 터 넷)		
기술사	제104회	6.27~7.3	8.3	9.19	9.22~9.25	10.18~10.30	11.14
기사 (산업기사)	제3회	7.25~7.31	8.17	8.29	9.1~9.4	10.4~10.17	11.14
	제4회	8.22~8.28	9.20	10.2	10.6~10.10 (10.9 제외)	11.1~11.14	12.12

■ 자료 : 한국산업인력공단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 (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